〔일련번호 : 30〕

양 천 구

주 의 요 구 및 통 보

제 목 안전관리비 정산 및 원가반영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관리·정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교통신호수 배치 등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을 정산 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제3항제23호에 따라 경비의 세비목 중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 발주시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요청'(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21708, 2022.4.21.) 공문에 따르면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를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반영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설계 예정가격을 금액 조정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자치구 등에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과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통 신호수 배치 등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항목을 건설사업자가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근거로

사후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직접인건비)로 직접 지급 정산하였으며, 이는 안전관리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실제 지출된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고 정산되는 것을 저해하며,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안전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비용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노무비 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교통신호수 배치비용 등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 약 자	준공금액 (천원)	부적정 내역
1	신월1동 곰달래로5길일대 노후보도정비공사	‘23.7.7. ~ ’23.12.31		724,310	신호수 배치비용 (10,550,000원) 노무비로 청구
2	안양천로 외 1개소 보행환경 정비공사	‘24.4.5. ~ ’24.7.30.		528,330	신호수 배치비용 (13,232,100원) 노무비로 청구
3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22.4.11. ~’23.6.9.		1,037,369	신호수 배치비용 (36,272,054원) 노무비로 청구
4	목동중앙서로 보도 정비공사	`24.03.18. ~ `24.06.13.		509,850	신호수 배치비용(46,021,510원) 노무비로 청구
5	오목로 보도 정비공사	`25.03.04. ~ `25.06.04.		423,709	신호수 배치비용(17,329,950원) 노무비로 청구
6	양원보도육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4.09.25. ~ `25.05.31.		576,107	신호수 배치비용(11,622,582원) 노무비로 청구

나. 안전관리비 원가 반영 부적정

△△과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안전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온전히 확보되어야 할 안전관리비를 원가 계산 시 직접공사비 항목에 반영하여 안전관리비가 일반 공사비와 동일하게 공사 낙찰률에 연동되어 당초 건설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 금액보다 적게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과 근로자 등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안전관리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안전관리비 원가 반영 부적정 내역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 약 자	준공금액 (천원)	부적정 내역
1	곰달래로 보도환경 개선사업	'23.4.17. ~ '23.12.31.		320,370	직접공사비에 안전관리비 계상
2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22.4.11. ~'23.6.9.		1,037,369	직접공사비에 안전관리비 계상
3	2022년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22.03.15. ~ `22.12.22.		1,148,776	직접공사비에 안전관리비 계상
4	2023년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23.04.05. ~ `23.12.18.		1,155,400	직접공사비에 안전관리비 계상
5	목동서로8길 외 1개소	`23.04.10. ~ `23.11.29.		636,619	직접공사비에 안전관리비 계상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비 확보·집행·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노무비와 안전관리비가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는 바, 교통신호수 배치 등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집행·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